

현물출자 등에 대한 세액감면(면제)신청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즉시
------	-----	------	----

구분	[]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[](영농조합법인, 영어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) 현물출자 []8년 자경농지 []8년 축사용지 []8년 자영업용지 []10년이상 자경산지 []농지대토 []공익사업용 토지 []대토보상 []국가에 양도하는 산지 []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토지 []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토지		
----	---	--	--

신청인	① 상호 또는 법인명		② 사업자등록번호	
	③ 대표자 성명		④ 생년월일	
	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			
(전화번호:)				

신청내용	감면(면제)	⑥ 과세연도	년 월 일부터
	받으려는	⑦ 법인세	년 월 일까지
	세액	⑧ 양도소득세	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	[]제30조제12항		
	[]제63조제10항		
	[]제64조제10항		
	[]제66조제9항		
	[]제66조의2제12항		
	[]제66조의3제9항		
	[]제66조의4제9항		
	[]제67조제9항		
	[]제72조제8항		
	[]제73조제6항		
	[]제79조의11		
	[]제97조의7제2항		
	[]제97조의9제2항		
「조세특례제한법」	[]제68조제2항		

			년 월 일
신청인 양도인			(서명 또는 인)
양수인			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첨부서류	뒤쪽 참조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	--------

신청인 제출서류	☐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가. 사업전환(예정)명세서 1부	☐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가.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나. 현물출자계약서 사본 1부
	☐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가.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나. 현물출자계약서 사본 1부	☐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 가.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특약체결자인 경우에는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예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) 1부
	☐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가.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나. 현물출자계약서 사본 1부	☐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 가. 「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매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사본 1부
	☐ 대토보상 가. 대토보상 신청서 1부 나. 대토보상계약서사본 1부	☐ 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가. 양수자가 기업형임대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1부
	☐ 8년 축사용지 가. 축산기간 및 폐업확인서 1부	☐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가. 양수자가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로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(매입약정증명서 등) 1부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☐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(해당 농지의 등기부등본) ☐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(해당 어업용 토지 등의 등기부등본) ☐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(해당 농지의 등기부등본) ☐ 주민등록표초본	

「전자정부법」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표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작성 방법

- ⑦ 법인세란 및 ⑧ 양도소득세란은 최저한세 감면종합한도의 규정을 적용한 후의 순수 감면(면제)액을 적습니다.
- 세액감면(면제)신청의 근거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.

☐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: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30조제12항	
현물출자	☐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: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63조제10항
	☐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: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64조제9항
	☐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: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6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0항
양도	☐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: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66조제9항
	☐ 8년 이상 축사용지 양도: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66조의2제12항
	☐ 8년 이상 자영 어업용지 양도: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66조의3제9항
	☐ 10년 이상 자경산지 양도: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66조의4제9항
	☐ 농지대토로 인한 농지 양도: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67조제9항
	☐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: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72조제8항
	☐ 대토보상: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73조제6항
	☐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: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79조의11
	☐ 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토지: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97조의7
	☐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토지: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97조의9